

## 2023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3. 6. 27.(화) 오전7시30분
-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 2023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3. 06. 16.	
이사 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 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일시 : 2023년 06월 27일(화) 07:30~09:10

2.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서울 중구 서애로 33)

###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박정운, 문휘창, 양인집, 이돈구, 최맹호
- 불참 이사 : 없음
- 참석 감사 : 윤규섭, 배한영
- 불참 감사 : 없음

### 4. 안건

#### 가. 심의안건

-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3)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5)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 및 폐지(안)
-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징계 회부(안)
-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8)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9)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나. 보고사항

- (1) 교육용기본재산 소송(공유물분할청구) 사항 보고

간인(서명)			
--------	---	---	---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8인 중 8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3년 제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 의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김종철 의장이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배한영 감사의 퇴장을 요청하다.

(배한영 감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임원 중 배한영 개방감사 임기가 2023.10.13. 만료 예정임을 공지한 후, 후임 개방감사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추천위원 5인을 선임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학교법인 추천위원 5인을 선임·의결하다.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

추천단위	위원 명단	비고
학교법인	김동건, 김호정, 문취창, 이돈구, 최명호	

(배한영 감사 회의장에 입장하다.)

간인(서명)			
--------	---	---	---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윤성우 교무처장으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제2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내국인 신규임용 8명, 외국인 신규임용 11명, 내국인 15명 재임용, 외국인 56명 재임용, 내국인 승진 5명, 외국인 승진 5명, 고속승진 1명, 복직 1명, 해임 21명(외국인 10명 포함) 대한 임용사항을 보고받다.
- 이어 최맹호 이사(인사위원장)가 인사위원회 검토 결과, 학교 제청 원안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등 3개 학과(부)는 1순위자 임용을 승인하되, 1순위자가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2순위를 임용하도록 승인하였으며, 고속승진의 경우 연구업적 목록표 양식에 저널의 발행호수·발행일, 논문게재 페이지(분량) 등 상세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 권고했음을 보고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1. 승인 여부 : 원안 승인(붙임, 승인 명단 참조)
2. 승인 부가 조건 :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등 3개 학과(부)는 1순위자를 임용하되, 1순위자가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2순위자 임용을 승인함.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3)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이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윤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으로부터 직제개편 후속조치로써 보수규정의 「보직수당표」에 창업교육센터장을 삭제하고, 글로벌창업지원단장

간인(서명)	김종철		윤성우
--------	-----	---	-----



( ),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부단장( )을  
추가하고자 함을 보고받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3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불임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보수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고, 2023년 4월28일부터 적용함.

불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정현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학처장으로부터 2023학년도 제2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내국인 재임용 2명(특성화트랙 2명), 외국인 재임용 3명, 승진임용 1명의 임용사항을 보고받다.
- 이어 임원들이 토의한 후,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은 학내 규정에 따라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연장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고용 불안으로 인해 학생교육, 연구 등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타대학 사례 등을 참고하여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한 검토를 학교 당국에 요청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승인(불임, 승인 명단 참조)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간인(서명)	김종철		유정은
--------	-----	---	-----

(5)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 및 폐지(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정현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학처장으로부터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복무규정 개정(안),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안), 강의전담교원 인사규정 폐지(안) 등 5건의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다.

(가)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외국인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 준용,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신설, 재임용 절차 개정 등

(나) 복무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외국인교원의 주당 강의 기본시수(학기당 15시수로 확대) 및 학기당 운영 가능 비교과과정 시수(6시수로 확대) 개정

(다)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삭제(폐지), 교무처장을 교학처장으로 변경, 신규채용 구비서류에서 신원진술서를 삭제,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승진 및 승급 제한 기준 개정, 정직 시 감액되는 보수 개정 등

(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안)

- 주요내용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마) 강의전담교원 인사규정 폐지(안)

- 주요내용 : 강의전담 교원 임용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5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각각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 및 폐지 승인사항

(가)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간인(서명)	김종철		이정운
--------	-----	---	-----

- 시 행 일 : 2023년 6월 27일

(나) 복무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6월 27일부터 개정하고,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외국인 전임교원은 이 규정 시행 후 도래하는 재임용시부터 적용.

(다)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6월 27일

(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6월 27일

(마) 강의전담교원 인사규정 폐지(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6월 27일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복무규정 신·구 대비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징계 회부(안)

간인(서명)			
--------	---	---	---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8)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소속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의 정년 도래에 따라 2023.08.31.자로 면직 제청을 보고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8호 안건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교원 임용 승인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승인
- 임용 승인 명단

임용사항	성명	교과	사유	면직일	비고

(9)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9호를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윤규섭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나. 보고사항

- (1) 교육용기본재산 소송(공유물분할청구) 사항 보고

간인(서명)	김종철		이정호
--------	-----	--	-----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3년 제7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6월 27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 종 철

(서명) 김종철

이 사 김 동 건

(서명) 김동건

이 사 김 호 정

(서명) 김호정

이 사 문 휘 창

(서명) 문휘창

이 사 박 정 운

(서명) 박정운

이 사 양 인 집

(서명) 양인집

이 사 이 돈 구

(서명) 이돈구

이 사 최 맹 호

(서명) 최맹호

감 사 배 한 영

(서명) 배한영

감 사 윤 규 섭

(서명) 윤규섭

간인(서명)

김종철



이재은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 1. 신규임용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동철		이정호
--------	-----	---	-----

2. 재임용

가. 정년트랙(내국인교원)

나. 특성화트랙(내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철



우광순

다.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철		이정호
--------	-----	---	-----



간인(서명)

김정필



이정민


3. 승진임용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4. 고속승진

5. 복직

간인(서명)	김정철		유정은
--------	-----	---	-----

6. 해임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현		이재은
--------	-----	---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직수당 <별표 6>, <별표 6-1>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직수당 <별표 6>, <별표 6-1>		별표수정
<별표 6-1> 보직수당표		<별표 6-1> 보직수당표		창업교육센터장 삭제  글로벌창업지원단장,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부단장 신설
보 직 명	2023학 년도	보 직 명	2023학 년도	
이상 생략		이상 생략		
특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처장(법인사무처장 제외), 연구산학협력단장, 홍보실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 도서관장, 외국어연수평가원장, 국제사회교육원장,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교육혁신원장	학보 편집인 겸 주간, 영재교육원장, 연구산학협력단 서울(분사무소)부단장, 연구산학협력부단장	특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처장(법인사무처장 제외), 연구산학협력단장, 홍보실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 도서관장, 외국어연수평가원장, 국제사회교육원장,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교육혁신원장, <b>글로벌창업지원단장</b>	학보 편집인 겸 주간, 영재교육원장, 연구산학협력단 서울(분사무소)부단장, 연구산학협력부단장, <b>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부단장</b>	
이상 생략	이상 생략	이상 생략	이상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교육신진화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교직부장, 글로벌법률상담소장, 학생상담센터장, 한국어문학교육원 부장, 통번역센터 부장, 외국어연수평가원 부장, TESOL전문교육원 부장, 서울 평생교육원 부장, FLEX센터개발부장, 다음=德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b>창업교육센터장</b> , SW기초교육센터장, 공동기기원장, 창업보육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장, 공공인재개발원장,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인권센터장	이하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교육신진화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교직부장, 글로벌법률상담소장, 학생상담센터장, 한국어문학교육원 부장, 통번역센터 부장, 외국어연수평가원 부장, TESOL전문교육원 부장, 서울 평생교육원 부장, FLEX센터개발부장, 다음=德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SW기초교육센터장, 공동기기원장, 창업보육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장, 공공인재개발원장,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인권센터장	이하 생략	
		<b>부칙</b>		부칙 신설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고, 2023년 4월 28일부터 적용한다.		

간인(서명)			
--------	---	--	---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 1. 재임용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 2. 승진임용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호
--------	-----	---	-----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 (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으로부터 초빙하는 것을 장려하며 해당학부(과) 교수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⑤ (생략)	제6조 (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⑤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0조의 2 (재임용 절차)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부(과)장은 연구실적 및 학부(과) 발전기여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교무처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신설) ㉡ (신설) ㉢ (신설) 2.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학교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신설)	제10조의 2 (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부(과)장은 아래 제2항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른 연구실적 및 학부(과) 발전기여도 평정결과 및 그 평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학부(과)장 본인이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대상인 경우, 의견서 작성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1인이 작성하고, 학부(과)장 본인은 의견서의 학부(과)교수 서명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속 학부(과) 내국인 교수 ㉡ 교양학부장 ㉢ 대학원장 2.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호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외국인교원평가표 등을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②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 번호 추가 자구 수정  목 신설  지구 수정 항 신설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외국인교원 임용계약서	<별표 1> (삭제 2023.06.27.)	별표 삭제
<별표 2> (신설)	<별표 2>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 아래 별표 2 참조	별표 신설

간인(서명)      김기철            이재은



<별표 2>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신설)

■ 연구실적

구 분	심사 기준
연구 점수	연 60 × 계약기간
※ 특기사항 ○ 연구점수는 외국인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 외국인교원 평가표

1.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다음의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외국인교원을 평정심사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원어강의 수행력 (P/F)	해당 교원은 원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교학처의 사전 승인 없이 원어강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F로 평가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원어강의 수행력	원어강의 수행	원어강의 수행하지 않음					
	평가결과	P	F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배점 50점) (가점 5점)	1. 강의평가 결과 재임용심사 학기를 제외한 재임용심사 대상 기간 내 총 강의평가 평균 적용							
	강의평가 평균점수	4.8 이상	4.6~4.79	4.4~4.59	4.2~4.39	4.0~4.19	3.8~3.99	3.6~3.79
	배 점	40	35	30	25	20	15	10
	※ 재임용심사 학기를 제외한 재임용심사 대상 기간 내 총 강의평가 평균이 3.6 미만일 때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2. 강의제반 직무 수행력(현 임용기간 중)							
	평가항목	기준	배점	비고				
	학사행정 기일 경과	1과목당	-1점					
	의무 교육 미이수	1건당	-1점					
	콘텐츠 개발 원고일정 미준수	1회당	-0.5점					
	콘텐츠 촬영 기준일정 미준수	1회당	-0.5점					
콘텐츠 기준촬영(15회) 초과시		-0.5점						
수강신청 기준 4주 미촬영시		-5점	개발취소					
해당사항없음		1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하며 최대 10점까지 감점한다. ※ 학사행정 기일 경과와 관련된 세목은 교학처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3. 강의평가 결과 개선도(가점 최대 5점) 이전 임용기간의 두 번째 학기 강의평가 결과(평균) 대비 개선도를 평가하되 가점만 부여한다.								
이전학기대비	+0.5 이상	+0.4 이상	+0.3 이상	+0.2 이상	+0.1 이상	동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단, 신규임용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동일'로 평가한다.								
학생지도에 관한사항 (배점 40점) (가점 5점)	1. 교육자로서의 역량(10점 만점)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0	8	6	4	2		
	가.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연행으로 징계를 받거나 미디어 게재 등으로 확인된 경우 '하'로 평가한다.							
	나. 그 외 비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연행으로 학생지도에 부적절한 사유로 검찰에서 기소한 경우 '중하' 이하로 평가한다.							
	다. 임용기간 동안 교육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건이 없는 경우 '중' 이상으로 평가한다.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호

2. 복무태도(10점 만점)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0	8	6	4	2

- 가.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에 어긋나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아, 학부(과)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2회 / 3회 / 4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중 / 중하 / 하'로 평가한다.
- 나.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시정요구를 이행한 경우 '중상' 이상으로 평가한다.
- 다. 임용기간 동안 학부(과) 및 학교행사참여나 학생동아리 지도에 소극적인 경우 '중하'이하로 평가한다.

3. 학부(과) 행사 참여 및 동아리 지도(10점 만점)

학부(과) 및 학교 행사 참여도	1회 0.5점(최대 5점)
학생 동아리지도	단독 3점, 공동 2점(최대 5점)

- 가. 학부(과) 및 학교 행사 참여도는 입학식, 졸업식, 학부(과) 개강, 종강모임, 학생만남행사, MT 등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공식 참여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생지도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학생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은 교학처에 등록, 승인된 동아리에 지도교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1개 학기만 운영하였을 경우 배점의 50%만 인정한다.

4. 재학생 재등록률 및 전년대비 신·편입생 등록률 기여(1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배점	
재학생 재등록률	90%이상	5점
	85%이상-90%미만	4점
	80%이상-85%미만	3점
	75%이상-80%미만	2점
	70%이상-75%미만	1점
	70%미만	0.5점
전년대비 신·편입생 등록률	90%이상	5점
	85%이상-90%미만	4점
	80%이상-85%미만	3점
	75%이상-80%미만	2점
	70%이상-75%미만	1점
	70%미만	0.5점

- 가. 재학생 재등록률 및 전년대비 신·편입생 등록률 신성기준은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고 평가배점은 위의 기준에 따른다.
- 나. 신설학부(과) 또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최초평가 시 정량평가 항목 중 재학생 재등록률 및 전년대비 신·편입생 등록률 기여 점수는 다른 모든 학부(과)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5. 재학생 재등록률 증가(가점 5점까지)

전년도 동일 학기 대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점 부여 1. 재학생 수 증가 2. 재등록률 증가	증가한 재등록률 1%(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당 0.5점 (학기당 최대 2.5점, 연간 최대 5점)
---	---

\* 단, 신설학부(과) 또는 신규임용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학교 및 학부(과) 인화도  
(10점)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배 점	10	8	6	4	2

2.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교원 평성결과 총점이 65점 이상이어야 재임용 대상이 된다.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은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복무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p>(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 전 재직 중인 외국인 전임교원은 이 규정 시행 후 도래하는 재임용 시 개정된 '&lt;별표 1&gt; 강의시수 기준표 (1년 기준)'를 적용한다.</p>	부칙 신설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강의시수 기준표 (1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당 강의시수 직책</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시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초과 시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r> </thead> <tbody> <tr> <td>총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8 (4 / 4)</td> <td style="text-align: center;">8 (4 / 4)</td> </tr> <tr> <td>학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r> <tr> <td>대 학 원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r> <tr> <td>처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r> <tr> <td>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r> <tr> <td>교 수 일 반 (내 국인 교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15 / 15)</td> </tr> <tr> <td>교 수 일 반 (외 국인 교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b>24</b> <b>(12 / 12)</b></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b>36</b> <b>(18 / 18)</b></td> </tr> <tr> <td rowspan="4">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td> <td>대외협력 중점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15 / 15)</td> </tr> <tr> <td>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6 (18 / 18)</td> </tr> <tr> <td>산학협력 중점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15 / 15)</td> </tr> <tr> <td>강 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최대) (9 / 9)</td> </tr> <tr> <td>겸 임 교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6 (3 / 3)</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r> </tbody> </table> <p>※ (생략) ※ (생략) ※ (생략)</p>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 장	0	8 (4 / 4)	8 (4 / 4)	학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 학 원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	15	12 (6 / 6)	27	교 수 일 반 (내 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 수 일 반 (외 국인 교원)	<b>24</b> <b>(12 / 12)</b>	12 (6 / 6)	<b>36</b> <b>(18 / 18)</b>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 사	·	·	18 (최대) (9 / 9)	겸 임 교 원	12 (6 / 6)	6 (3 / 3)	18 (9 / 9)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강의시수 기준표 (1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당 강의시수 직책</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시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초과 시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r> </thead> <tbody> <tr> <td>총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8 (4 / 4)</td> <td style="text-align: center;">8 (4 / 4)</td> </tr> <tr> <td>학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r> <tr> <td>대 학 원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r> <tr> <td>처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r> <tr> <td>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r> <tr> <td>교 수 일 반 (내 국인 교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15 / 15)</td> </tr> <tr> <td>교 수 일 반 (외 국인 교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b>30</b> <b>(15 / 15)</b></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b>42</b> <b>(21 / 21)</b></td> </tr> <tr> <td rowspan="4">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td> <td>대외협력 중점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15 / 15)</td> </tr> <tr> <td>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4 (12 /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6 (18 / 18)</td> </tr> <tr> <td>산학협력 중점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15 / 15)</td> </tr> <tr> <td>강 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최대) (9 / 9)</td> </tr> <tr> <td>겸 임 교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6 / 6)</td> <td style="text-align: center;">6 (3 / 3)</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9 / 9)</td> </tr> </tbody> </table> <p>※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p>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 장	0	8 (4 / 4)	8 (4 / 4)	학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 학 원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	15	12 (6 / 6)	27	교 수 일 반 (내 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 수 일 반 (외 국인 교원)	<b>30</b> <b>(15 / 15)</b>	12 (6 / 6)	<b>42</b> <b>(21 / 21)</b>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 사	·	·	18 (최대) (9 / 9)	겸 임 교 원	12 (6 / 6)	6 (3 / 3)	18 (9 / 9)	표 수정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 장	0	8 (4 / 4)	8 (4 / 4)																																																																																																									
학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 학 원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	15	12 (6 / 6)	27																																																																																																									
교 수 일 반 (내 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 수 일 반 (외 국인 교원)	<b>24</b> <b>(12 / 12)</b>	12 (6 / 6)	<b>36</b> <b>(18 / 18)</b>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 사	·	·	18 (최대) (9 / 9)																																																																																																								
겸 임 교 원	12 (6 / 6)	6 (3 / 3)	18 (9 / 9)																																																																																																									
주당 강의시수 직책	기본 시수	초과 시수	계																																																																																																									
총 장	0	8 (4 / 4)	8 (4 / 4)																																																																																																									
학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대 학 원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처 장	12 (6 / 6)	12 (6 / 6)	24 (12 / 12)																																																																																																									
학부(과)장 및 기타 보직 교수	15	12 (6 / 6)	27																																																																																																									
교 수 일 반 (내 국인 교원)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 수 일 반 (외 국인 교원)	<b>30</b> <b>(15 / 15)</b>	12 (6 / 6)	<b>42</b> <b>(21 / 21)</b>																																																																																																									
특성화 트랙 전임교 원	대외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교육·학 생지도중 점 교수	24 (12 / 12)	12 (6 / 6)	36 (18 / 18)																																																																																																								
	산학협력 중점교수	18 (9 / 9)	12 (6 / 6)	30 (15 / 15)																																																																																																								
	강 사	·	·	18 (최대) (9 / 9)																																																																																																								
겸 임 교 원	12 (6 / 6)	6 (3 / 3)	18 (9 / 9)																																																																																																									

간인(서명)

김정원



유정운

현행	개정	비고
※ (생략) ※ (생략) ※ (생략) ※ 외국인 전임교원 : 교과과정은 본인 개발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학점(강의시수)의 100%를 인정함. 비교과과정은 오프라인 특강, 화상 특강 및 전화 외국어 회화에 한하며 학기당 3시수까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외국인 전임교원 : 교과과정은 본인 개발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학점(강의시수)의 100%를 인정함. 비교과과정은 오프라인 특강, 화상 특강 및 전화 외국어 회화에 한하며 학기당 6시수까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구 수정

간인(서명)	김정철		이정호
--------	-----	---	-----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 (교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임교원은 <u>정년트랙 전임교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u> 으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u>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의</u> 임용조건 및 기간,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 <u>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및 강의전담교원 인사규정</u> ”에서 정한다.	제3조 (교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임교원은 <u>정년트랙 전임교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u> 으로 구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u> 임용조건 및 기간,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 <u>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u> ”에서 정한다.	자구 수정
제10조 (상신절차) 학부(과)심사위원회는 신규채용 심사를 하고, 그 결과 3배수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u>교무처장</u> 이 총장에게 상신한다.	제10조 (상신절차) 학부(과)심사위원회는 신규채용 심사를 하고, 그 결과 3배수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u>교학처장</u> 이 총장에게 상신한다.	자구 수정
제13조 (신규채용 구비서류) (생략) 1. ~ 8. (생략) <u>9. 신원진술서(소정양식) 6부</u> 10. ~ 12. (생략)	제13조 (신규채용 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u>9. 신원진술서(소정양식) 6부</u> 10. ~ 12. (현행과 같음)	자구 삭제
제20조 (승진 및 승급 제한) ① (생략) 1. (생략) <u>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u>	제20조 (승진 및 승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 시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u>	자구 수정

간인(서명)			
--------	---	--	---

현행	개정	비고
가. 정 직 : 24개월 나. (생략) 다. (생략) 3. (생략) ② (생략)	<u>계처분의 경우에는 승급 시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가. 정 직 : 18개월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 (징계의 종류) (생략) 1.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 원의 신분을 보장받으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u>3분의 2</u> 를 감한다. 2. ~ 4. (생략)	제43조 (징계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 원의 신분을 보장받으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u>전액</u> 을 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신설)	부칙 <u>(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 행한다.</u>	부칙 신설

간인(서명)			
--------	---	---	---

(붙임)

## 징계 의결 요구서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은
--------	-----	---	-----